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선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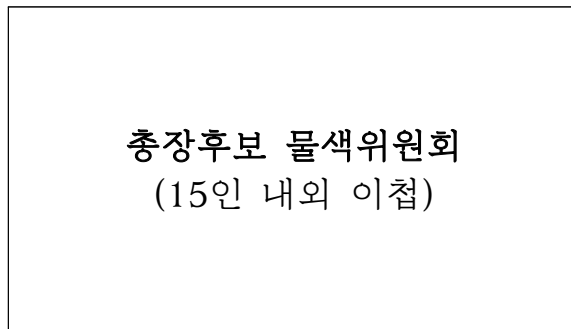
- 차례 -

1. 제18대 총장선임 절차	2
2. 총장후보 물색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
2-1. 연세대학교 전현직 총장의 제18대 총장후보 등록절차 등	6
3.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7
4.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절차	10
5. 본 지침 이외 사항의 이사장 위임	10
6. 적용 범위	10

2015. 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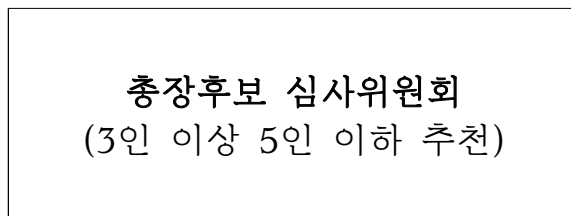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 제18대 총장선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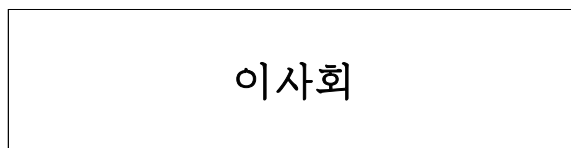
- 1. 본인 지원
 - 연세대학교 교수
 - 외부 인사
- 2. 물색위원회 추천
 - 물색위원 추천

↓ 이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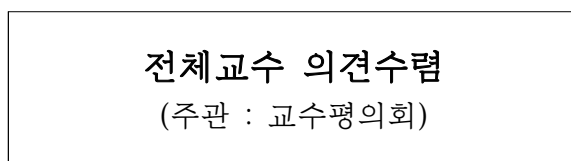


단, 추천된 총장후보 수가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달 후보를 이사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충원할 수 있다.

↓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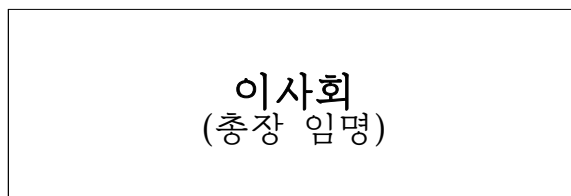


↓ 전체교수 의견수렴 요구



이사회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의견수렴 결과 제출



이사회에서는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전체교수의 의견 수렴결과를 참고하여 제 18대 총장을 임명

2. 총장후보 물색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가) 위원 구성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위촉 방법
① 교계대표	2	이사장에 위임
② 교수대표	5	총장에게 위임
③ 직원대표	2	총장에게 위임
④ 동문회대표	2	동문회장에 위임
⑤ 역대 총장(단, 역대부총장도 포함함)	1	이사장에 위임
⑥ 학부모대표	1	총장에게 위임
⑦ 사회유지	2	이사장에 위임
합 계	15	

나) 현직 총장이 제18대 총장에 출마하는 경우, 총장에게 위촉이 위임된 총장 후보 물색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단, 위원 중 교수대표는 교수평의 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위원을 배정한다.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라) 서기 및 실무간사

① 서기 1인 :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실무간사 1인 : 위원장이 법인본부장과 협의하여 법인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마) 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구성 후 결원 발생시 위원회에서 충원 여부를 결정하되, 충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위원 선임 동의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2) 기능

가) 연세대학교 총장후보 물색

나) 등록된 후보들에 대한 결격자 판별

라)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에 총장후보 이첩 : 15명 내외

마) 필요시 본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3) 총장후보의 자격

- 가) 연세대학교 창립정신에 투철하고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으로서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학식과 덕망과 경영 능력을 갖춘 분
- 나) 연세대학교 전·현직 총장으로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1회 이상 중임하지 않은 분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4) 물색 방법 : 총장후보의 자격 조건과 추천 방법을 명시한 공고문(公告文)을 주요 일간지 및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가) 물색위원 추천 : 원칙적으로 외부 인사를 추천하되, 위원당 피추천인은 3인 이하로 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교원(부교수 이상) 추천은 위원당 1인으로 한정한다.

나) 본인 지원

- ① 연세대학교 교원(부교수 이상) : 연세대학교 교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같은 단과대학에서의 교원 추천은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외부 인사 : 사회유지 3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임원 3인, 연세대학교 교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같은 단과대학에서의 교원 추천은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추천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5) 후보 등록

- 가) 등록 방법 : 서류 제출을 통해 등록 명부에 등재한다.

나) 제출서류

- ① 물색위원 추천의 경우 : 추천인이 추천서 제출
(추후 물색위원회에서 총장후보 본인에게 ㉠이력서(또는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증명서, ㉢학위증명서, ㉣교인증명서,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는 후보 등록에서 제외한다)
- ② 본인 지원의 경우 : 본인이 지원서(㉠이력서(또는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증명서, ㉢학위증명서, ㉣교인증명서, ㉤추천서, ㉥서약서 포함) 제출

6) 총장후보의 로비 활동 금지

총장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부터 자신의 총장 선임을 위해 위원들, 또는 다른 후보에게 다음의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 가) 위원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교무위원직 임명을 약속하는 행위
- 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에게 총장 후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위의 (가)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 다) 위원들에게 자신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어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 라) 위원들에게 특정 타인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 마)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7) 심사위원회에 후보 이첩

위원회 결정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이첩한다.

8)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역할

가) 위원장

- ①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물색위원회를 소집한다.

나) 부위원장

-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의 임기 :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 대상 총장후보 이첩일까지

라) 위원 제척사유

- ① 위원이 총장후보로 지원하는 경우 즉시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총장후보로 추천되는 경우에는 총장후보와 위원직 중 하나를 택해 즉시 사임해야 한다.

- ②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추천한 총장후보에 대한 결격여부 판별시 해당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총장후보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해당 총장후보에 대한 결격여부 판별시 해당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마)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
-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위원은 기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위원회 소집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회의 개최 사전 통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0)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 가) 의사 정족수 : 위원정수 과반수
- 나)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11) 회의록 서명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가 자필서명한다.

2-1. 연세대학교 전·현직 총장의 제18대 총장후보 등록절차 등

- 1) 자격 : 공고문상의 총장후보 자격에 따름
- 2) 등록방법 : 공고문상의 접수마감일까지 출마의사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

3.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가) 위원 구성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위촉 방법
① 교계대표	2	이사장에 위임
② 교수대표	6	총장에게 위임
③ 직원대표	2	총장에게 위임
④ 동문회대표	2	동문회장에 위임
⑤ 역대 총장(단, 역대부총장도 포함함)	1	이사장에 위임
⑥ 학부모대표	1	총장에게 위임
⑦ 사회유지	1	이사장에 위임
⑧ 학생대표	1	총장에게 위임
합 계	16	

나) 현직 총장이 제18대 총장에 출마하는 경우, 총장에게 위촉이 위임된 총장 후보 심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단, 위원 중 교수대표는 교수평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위원을 배정한다.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라) 서기 및 실무간사

① 서기 1인 :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실무간사 1인 : 위원장이 법인본부장과 협의하여 법인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마) 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구성 후 결원 발생시 위원회에서 충원 여부를 결정하되, 충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위원 선임 동의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2) 기능

가) 총장후보의 심사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 : 물색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총장후보)

나) 이사회에 총장후보 추천 :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단, 추천된 총장후보 수가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달 후보를 이사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충원할 수 있다.

다) 필요시 본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3) 총장후보의 로비 활동 금지

총장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부터 자신의 총장 선임을 위해 위원들, 또는 다른 후보에게 다음의 로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후보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가) 위원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교무위원직 임명을 약속하는 행위

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에게 총장 후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위의 (가)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다) 위원들에게 자신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어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라) 위원들에게 특정 타인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마)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총장후보 대학발전방안 등 소견 청취

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후보들로부터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나) 총장후보들은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원 대학발전 계획안(A4용지 10매 내외 분량)과 연구논문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5) 이사회에 후보 추천

위원회 결정을 통해 총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6) 위원장과 위원의 역할

가) 위원장

①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단 표결시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나) 부위원장

-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

- ① 임기 :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이사회에 총장후보 추천일까지
- ② 제18대 총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원칙적으로 총장임기 전반기(前半期) 동안 교무위원으로 신임 또는 연임(유임) 발령하지 아니한다.

라) 위원 제척사유

- ① 등록된 총장후보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은 물색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총장후보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사퇴해야 한다.

마)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
-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위원은 기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 소집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회의 개최 사전 통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8)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 가) 의사 정족수 : 위원정수 과반수
- 나)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9) 회의록 서명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가 자필서명한다.

4.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절차

- 1) 이사회는, 총장후보 심사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들에 대해,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요약, 이를 교수평의회에 전달하여, 전체교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2) 의견 수렴은,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나 순위 도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의해 최종후보로 선임되었을 경우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적격여부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확인함에 있다.
- 3) 교수평의회의 의견수렴은, 후보자 개인의 학식(연구실적), 덕망, 경영 및 행정 능력, 국제 감각, 대학 발전계획, 비전(미래에 대한 구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4) 의견수렴의 방법과 절차는, 추천된 후보들이 모두 동의하는 방식으로 교수평의회가 정하여 진행한다. 단 그 진행과정에 본래 인준절차 및 인준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어떤 방식의 투표행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투표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결권 행사의 판단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5) 이사회는, 교수평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재적 교수의 과반 이상이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본 후보자는 총장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 6) 교수평의회는, 이사회가 의견을 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이사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도과하면 이사회 일정에 따라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한다.

5. 본 지침 이외 사항의 이사장 위임

제18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6.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 선임에 한하여 적용한다.